



# 최신 판례 예규

## 마케팅 Tax Consulting

회원으로부터 선지급받는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동안 기간안분하여 익금반영함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관리 비용 및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으로부터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법인-3038, 2019.05.22

### ◆ 질 의

- 신용카드사가 고객으로부터 1년 단위로 선 지급 받는 연회비의 손익 귀속시기  
(갑설) 연회비는 기간경과에 따라 안분하여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을설) 연회비는 수령하는 시점에 모두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 ◆ 회 신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카드발급, 이용 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 및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으로부터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다 기존 공장을 매각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서면법인-92, 2019.06.05

### ◆ 질 의

- 질의법인은 부산시 00구에서 2003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 1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 2018.11.10. 종전 제조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동일지역 내에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2018.12.12. 신규 공장으로 이전함
-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다 기존 공장을 매각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존공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국유사업자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확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지연수취(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사전법령부가-304, 2019.07.04

◆ 질 의

-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 동일 과세기간에 공급받는 자를 국유사업자로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 회 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법」 제59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이하 "총괄사업장")한 경우로서, 국유재산 건축공사용역을 공급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총괄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A법인이 설립당시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는 제조업이登記되어 있지 않으나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형식적 기재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6두30576 판결 참조)이므로 A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서울세제과-9367, 2019.07.03

◆ 질 의

A 법인은 설립당시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

제조업이登記되어 있지 않았으나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 A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 중 하나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58조의 3 제4항에서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A법인이 설립당시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는 제조업이登記되어 있지 않으나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형식적 기재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6.4.15. 2016두30576 판결 참조)이므로 A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제조업 영위사실 입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